

형동조합 설립 절차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작성)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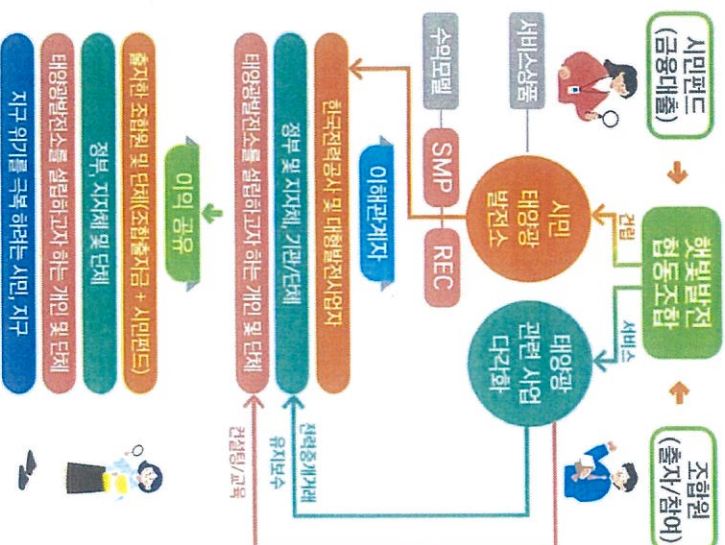
필수 제출 서류 (선택 신고)

1. 장원초등학교 3학년 2반
2. 장원초등학교 4학년 1반
3. 장원초등학교 5학년 1반
4. 장원초등학교 6학년 1반
5. 장원초등학교 7학년 1반
6. 장원초등학교 8학년 1반
7. 장원초등학교 9학년 1반
8. 장원초등학교 10학년 1반
9. 장원초등학교 11학년 1반
10. 장원초등학교 12학년 1반

이바형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항목	합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 설립인원	5인	
	외국인 자본권	합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조합원 지각	1인 1표	
차이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의 실현,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범위	사업상 제한 없음	주식(약식조합)에 합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의 경우를 제외(합동 공익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여의할
	설립 배당	사도주식에 설립신고 이종설립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주식 소액 증권(행정기관의 감의 영)
세제상 혜택	없음	조합원의 부과금 면제	
영여금의 행정적 부담	영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영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감독	없음	있음	

에너지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과목사양

- ☑ 에너지 시민교육
-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교육재 개발
- ☑ 태양광 덕터 양성교육

지역사회공헌사업

-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